

가천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지침

제정 2009. 12. 28.

개정 2012. 03. 01.

개정 2017. 10. 21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 및 “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”에 따라 가천대학교(이하 ‘본교’라 한다) 내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의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 및 지식의 유출을 방지하고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수행하는 본교 내의 모든 연구기관(연구소 및 센터 등) 과 연구책임자 및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(보조)원으로 한다.

제3조(보안관리 담당자) 본 지침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 관리 담당부서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팀으로 하고, 산학협력단장은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제2장 보안관리의 체계

제4조(보안관리심의회)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 산학협력단 내에 보안관리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두며 산학협력팀에서 총괄한다.

② 심의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으로 하며, 운영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간사위원 1인을 둔다.

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안관리 지침의 제·개정 관한 사항
2.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
4.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심의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
의결하되,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3장 보안등급 분류

제5조(분류기준)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

1. 보안과제 : 연구개발 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,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

가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

나.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

다.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라.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

마. 그 밖에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

2. 일반과제: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

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.

③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라 I·II·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「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」에 따라 군사 I·II·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분류절차)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보안관리심의회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심의회는 해당 과제에 대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하고 연구책임자에게 (삭제)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는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안등급 변경) ①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

안등급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, 산학협력단장에게 변경내용, 변경 사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등급의 변경내용 등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보안등급의 변경을 철회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장 보안 조치

제8조(보안등급에 따른 조치)① (삭제)

② (삭제)

③ (삭제)

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.

제9조(보안관리현황 보고) 보안관리 담당자는 연구과제의 ‘[별지 서식 제 6 호] 보안관리 현황’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안사고 처리

제10조(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) ①연구책임자 및 보안관리 담당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,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일시·장소, 사고자 인적사항, 사고내용 등을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은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보안사고 발생시 산학협력단장과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지원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산학협력단장, 학교의장,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,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11조(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) ①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연구활동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

하며, 위반시 관계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②산학협력단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기타) 본 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이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규칙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09. 12. 28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. 03. 01부터 시행한다.

(시행일) 이 지침은 2017. 10. 21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(제8조 관련)

1. 보안관리 체계

해당 과제	세부 조치사항	이행 대상		
		연구처	관리 기관	연구 책임자
모든 과제	1. 이 지침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연구기관 보안관리 실정을 반영한 자체 보안관리규정의 제정·개정	○	○	
모든 과제	2.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와 관련한 각종 안전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보안심의회 운영	○	○	
모든 과제	3. 연구과제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·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관리책임자 및 보안 업무 전담직원 지정·배치	○	○	
모든 과제	4.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부서 및 연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규정 교육·홍보 실시	○	○	
모든 과제	5.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보안 우수자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조치 명시	○	○	
모든 과제	6. 보안사고 예방·조치·대응 등 재발 방지책 마련	○	○	
모든 과제	7. 연구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·수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	○	○	
모든 과제	8. 화재, 홍수, 재난,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	○	○	
보안 과제	9.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·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승인 절차 이행	○	○	

2. 참여연구원 관리

해당 과제	세부 조치사항	이행 대상		
		연구처	관리 기관	연구 책임자
모든 과제	1. 참여연구원(외국인 포함)의 채용·갱신·퇴직 시 고용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받고, 이 경우 연구과제 보안관리 의무 및 그 위반 시의 제재 등을 명시		○	○
모든 과제	2. 연구과제 수행 연구원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한 보안 관련 교육 이수			○
모든 과제	3. 퇴직(예정)자의 반출(예상)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, 연구성과물 회수,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을 제때 조치		○	○
모든 과제	4. 외부기관 파견자 등 임시직 및 방문자에 대한 별도 보안조치		○	○
모든 과제	5. 연구성과 유출 혐의(전력)자가 과제에 참여할 경우 특별 관리조치		○	○
모든 과제	6. 참여연구원의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 보고 실시		○	○
보안 과제	7. 외국인 연구원의 별도 보안조치(영문 보안서약서 작성, 출입지역 제한, 반출·반입 물품 제한, 특이 동향 관리 등)		○	○
보안 과제	8. 보안과제 참여연구원이 과제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외국인 현황 관리		○	○
보안 과제	9. 외국인 연구원의 보안과제 참여 시 소속 기관장의 승인절차 이행			○

3.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의 관리

해당 과제	세부 조치사항	이행 대상		
		연구처	관리 기관	연구 책임자
모든 과제	1.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 보안등급 표기	○	○	○
모든 과제	2. 연구수행 단계별 특허권·지식재산권 확보 방안과 주요 연구자료 및 성과물의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·시행	○	○	○
모든 과제	3. 연구개발 성과의 대외 공개(홈페이지 게재 포함) 및 제공 시, 연구책임자의 사전 보안성 검토 확인절차 이행	○	○	○
모든 과제	4. 연구개발결과의 해외 기술이전(양도) 추진 시 관계법령 준수 -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) - 「기술개발촉진법」 제13조(전략기술 수출의 승인 등)	○	○	○
모든 과제	5. 연구개발 결과 활용 시 국내에 있는 자를 계약체결 대상으로 우선 고려	○	○	○
보안 과제	6. 외부 기관과 보안과제의 공동(협동·위탁 포함)연구 협약 시 성과물의 귀속, 자료 제공 및 장비 반납 등에 관한 사전 보안대책 마련 및 적용	○	○	○
보안 과제	7. 연구성과물 기술 실시(사용) 계약 시 “제3자 기술 실시(사용)권 금지협약” 체결	○	○	○

4. 연구시설 관리

해당 과제	세부 조치사항	이행 대상		
		연구처	관리 기관	연구 책임자
모든 과제	1. 노트북,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반입·출입 절차 마련 및 이행		○	○
모든 과제	2. 외곽,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, 침입감지센서 등 첨단장비를 설치·운영		○	
모든 과제	3.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 후 특별 보안관리 조치		○	
모든 과제	4. 외부 입주기관(벤처기업 포함)의 연구시설 내부 출입 통제 조치		○	
보안 과제	5. 연구시설 출입자에 대한 개인별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통제		○	
보안 과제	6. 외부방문자 출입 시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허가 후에 담당 직원이방문자와 함께 방문지역 동행		○	○

5. 정보통신망 관리

해당 과제	세부 조치사항	이행 대상		
		연구처	관리 기관	연구 책임자
모든 과제	1.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목적으로 전산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,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장비의 설치·운영	○	○	
모든 과제	2.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	○	○	○
모든 과제	3. 컴퓨터에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설치 시, 보안관리 책임자의 사전 승인	○	○	○
모든 과제	4. 무선통신망 구축 시 비인가 사용자의 차단을 위한 사용자 인증, 암호화 통신, 암호화 키의 주기적 변경 등 보안조치	○	○	○
모든 과제	5. 사전에 소속 기관에서 인가받은 보안 이동형 저장매체 사용	○	○	○
모든 과제	6. 보안시스템 안전사고에 대비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원거리 지역 보안시설에 중요 데이터 별도 복사본 보관	○	○	○
모든 과제	7. 비인가 개인용 정보통신매체 반입·출입 통제 및 내부망 연결 제한	○	○	○
모든 과제	8.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,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	○	○	○
모든 과제	9. 보안사고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기록(최소 6개월 이상) 보관 - 보관 권장기간 : 1년	○	○	○
모든 과제	10. 직책, 업무에 따라 각종 전산 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	○	○	○
모든 과제	11. 네트워크 자료(시스템 구성, IP 현황 등)의 대외 보안관리	○	○	○
모든 과제	12. 전산장비 폐기 및 외부 이관 시,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에 저장된 주요 자료가 불법으로 복구되지 않도록 조치	○	○	○
보안 과제	13. 내부망의 연구실별 물리적 또는 논리적(방화벽 등) 분리	○	○	○
보안 과제	14. 업무용 컴퓨터 자료를 휴대전화, 이동형 저장매체 등 개인용 정보통신매체에 복사·저장·전송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 승인	○	○	○

해당 과제	세부 조치사항	이행 대상		
		연구처	관리 기관	연구 책임자
보안 과제	15.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부로 자료 전송 시, 승인 절차 등 보안대책 마련 및 이행	○	○	○
보안 과제	16. 메신저, 인터넷 저장소,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	○	○	○

보안 서약서(참여연구원)

- 소속(대학, 학과) :
- 직명(직위·급, 학년) :
- 성명 :
- 연구과제명 :

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 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아래의 보안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,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1.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
2.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
3.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·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유지
4. 국방·안보관련 기술로 전용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유지
5. 연구책임자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·대외제공·공개금지
6.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,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금지
7.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

200 . . .

서약자 서명 : (인)

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[별지 제4호 서식]

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(참여연구원)

○ 연구과제명 :

○ 연구책임자 :

참여연구원				접촉사유 및 상대자	책임자 (서명)
성명	접촉 일시	장소	방법		
				- 접촉사유 : - 상대자 .국적: .성명: .연락처:	
				- 접촉사유 : - 상대자 .국적: .성명: .연락처:	
				- 접촉사유 : - 상대자 .국적: .성명: .연락처:	

[별지 제5호 서식]

연구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교육기록부

○ 연구과제명 :

○ 연구책임자 :

일련 번호	일자	점검 및 교육내용	장소	대상인원	비 고

*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정기,수시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부를 작성하여 전문기관 보고시 제출하여야 함.

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(제9조 관련)		
(담당 부서:	담당자:	전화번호:)
<input type="checkbox"/> 기관명: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: 20 . 1. 1 ~ 20 . 12. 31 (1년)	

① 연구보안심의회 운영 현황

개최 일자	심의 건수	주요 사항	비고

② 사업 및 과제 현황

대사업명	중사업명	세부사업명	세부(단위)과제			비고
			보안과제수	일반과제수	계	

주1) 대사업명은 프로그램 단위 사업명 기재(예: 미래원천사업, 기초사업, 원자력사업 등)

주2) 중사업명은 중간단계 사업명 기재(예: 미래원천사업 중 나노사업, 바이오사업, 우주사업 등)

주3) 세부사업명은 최하위단계 사업명 기재(예: 나노사업 중 나노원천사업, 나노기반협력사업 등)

주4) 세부(단위)과제는 보고기간에 수행한 세부(단위)과제 수를 기준으로 작성

- 계속과제는 1개 과제로 하되, 보안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보안등급으로 기재

③ 보안과제 관리 현황

세부사업 명	세부(단위)과제 명	연구책임 자	연구기간		보안과제 지정일자	보안과제 관리 사유
			'07년도	'08년도		
			'07. . . ~ '08. . .	'08. . . ~ '09. . .		
				

주1) 보안과제로 지정되어 있는 과제만 기재(일반과제에서 보안과제로 변경된 과제도 포함)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(2쪽)

④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현황

조치 사항	보안과제 건수	일반과제 건수	비고
① 외국기업 및 국외연구기관 위탁 시 중앙행정기관 승인			
② 외국인 참여 시 기관장 승인			
③ 연구 성과물 대외공개 시 보안대책 수립			
④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실시 횟수	()회 실시		
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 마련 여부	(Y / N)		관련 규정, 조항
⑥ 보안사고 대응체계 마련 여부	(Y / N)		관련 대책 별첨

⑤ 보안과제 해제 현황

세부사업 명	세부(단위)과제 명	연구책임 자	연구기간		보안과제 해제일자	보안과제 해제 사유
			'07년도	'08년도		
			'07. . . ~ '08. . .	'08. . . ~ '09. . .		
				

⑥ 연구개발과제 보안사고 관리 현황

세부사업 명	세부(단위)과제 명	연구책임 자	보안사고 발생일자	보안사고 주요내용	보안사고 처리결과

주1) 필요시 세부명세 첨부

⑦ 그 밖의 건의사항

위와 같이 본 기관의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을 제출합니다.

20

보안관리 부서장: (인)
관 리 기 관 장: (직인)

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